

방송 통신 법률 상식

망 중립성 논의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010년 12월 13일,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디지털미디어 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 업계에서 2월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접속차단 문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KT와 삼성전자의 싸움으로도 관심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최초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KT와 삼성전자의 주장을 나름대로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가지 비유를 동원했는데 아마도 고속도로 관련 비유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들어 보셨을 것이다.

KT의 주장은 삼성전자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스마트 TV를 판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의 인터넷 망에 접속시키는 행위는 사기업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통행료도 내지 않고 과적 차량을 몰고 들어와서 고속도로의 일부를 점거한 채 장사를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에 대해 KT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들어보면 모두 그럴듯한 이야기이고, 양사는 모두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망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망 중립성의 원칙이란 무엇일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 통신망은 사기업(私企業)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인터넷 통신망은 통신기업의 사유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 이와 같이 통신망의 사유재산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이 과점인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사업자는 자신의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콘텐츠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이 수직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를 우대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 외에, 콘텐츠 제공자들이 기존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업모델을 침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즉 무선인터넷 망을 통하여 휴대폰과 같이 인터넷 전화를 행하는 서비스는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급속도로 대체할 우려가 있게 된다. 또한, 콘텐츠 업체들은 P2P나 고화질 동영상 전송 등의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

러한 트래픽 과다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과다한 망 유지보수 및 확충비용을 들게 한다. 즉, 예전에는 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즉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다시 인터넷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관계였다면, 현재는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에서 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전화이용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콘텐츠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의 이해가 상호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망 중립성의 원칙이란 이와 같이 변화된 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원칙이다. 이러한 망 중립성의 원칙은 인터넷의 최종 이용자 측면과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단 이용자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이용자의 권리). 한편, 인터넷 사업자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아니 되고(차단금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불합리한 차별금지).

그렇다면, 이번 KT와 삼성전자 사태는 결국 KT의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차단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는 일시적인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데, 결국은 스마트TV의 트래픽 유발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KT와 삼성전자 간에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한 논쟁이 벌어졌고, 트래픽 유발가능성에 대한 실측 결과가 공개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론을 여기서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KT와 삼성전자 사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망 중립성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양 당사자가 모두 망 중립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서로의 주장논리를 전개하였지만, 망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직 법제화되지 아니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현재, 망 중립성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의 근간을 이루는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자 권리 등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사업법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용자이익침해행위 등으로 상당부분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역시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망 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 중립성 원칙의 등장배경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존재하는 만큼(참고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케이블 사업자에 의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간주하지 않고 방송에 부수한 정보제공서비스로 보아 규제를 하지 않아왔다),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방송, 통신에 대한 강력한 규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 중립성 개념을 법제화하여 사업자들에게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